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5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전진숙 · 남인순 · 이주희
박해철 · 서미화 · 박지원
이수진 · 윤건영 · 김한규
채현일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목조름행위”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장기간 육체적 기능을 손상시키려는 의도의 유무 또는 가시적인 상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목을 조르거나 압박하거나 코 또는 입을 막아 정상적인 호흡이나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와 제3호 및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2조제9호에 따른 목조름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원인 및 실태”를 “원인·실태 및 목조름행위 여부”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 따른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목조름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 <u>목조름행위</u> ”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장기간 육체적 기능을 손상시키려는 의도의 유무 또는 가시적인 상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목을 조르거나 압박하거나 코 또는 입을 막아 정상적인 호흡이나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생 략) <u><신 설></u>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와 제3호 및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 -----

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

-----다만, 제2조제9호에
따른 목조름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와 격리
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

-----원

인·실태 및 목조름행위 여부-

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1. ~ 6. (생략) ② ~ ⑫ (생략)	-----. 제29조(임시조치) ① ----- ----- ----- ----- ----- ----- -----. <u>다만, 제2조제9호에 따른 목조 름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피해 자와 격리시키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	---